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A Study on Considerations of the Library Policy Establishment to Resolv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윤혜영(Hye-Young Yoon)**

〈목 차〉

I. 서론	2.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와 그 소속직제
II. 이론적 배경	IV. 도서관계 노인 서비스 동향
1. 정보격차	1. 노인 연구
2. 정보격차와 도서관	2. 노인 서비스 지침
3.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3. 노인 서비스 현황
III. 정보격차 관련 법률 규정	V. 결론 및 제언
1. 「국가정보화기본법」	

초 록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키워드: 정보격차, 노인, 도서관정책, 정보서비스, 정보취약계층

ABSTRACT

As our society enters an aged societ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resolv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However, the digital divide of the older adults are generally neglected compared to other information poo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iderations for library policy development in order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of the older adults. The study examined regu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so it investigated guidelines and current status of services to older adults in the library. The study suggested that public libraries should be used as a basic base for the services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to older adults across the country, and the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sustainably through public libraries.

Keywords: Digital divide, Older adults, Library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poor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중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yyoon@joongbu.ac.kr)

•논문접수: 2017년 11월 11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77-105,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77]

I. 서론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 7,076,000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17). 이들 노인은 우리사회에서 정보격차를 논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의학 발달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고학력을 가진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건강, 교육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 우리사회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7. 07. 26.) 제21조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주민과 더불어 노인 역시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SNS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으로 인해 노인의 정보소외현상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산출결과,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54.0%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보유율도 장노년층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특히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기본 정보격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이 가중되면서 정보격차는 경제격차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단절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를 가져올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은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독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떨어지는 노인과 저시력자 등을 대상으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대활자본을 제작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7). 이 사업은 도서관계가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물론 전국의 단위도서관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현실은 노인들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서관계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드러나 있다. 2014년 발표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의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안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집단은 장애인,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환자와 보호자, 수용자,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을 위한 정책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노인집단을 위한 서비스는 추진전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에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수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도서관분야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도서관법」(법률 제13960호 일부개정 2016. 02. 03), 「노인복지법」(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2017. 03. 14.), 「기초연금법」(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2016. 12. 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1. 27.),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 2017. 07. 26.)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서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에 나타난 규정을 확인하여 노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넷째, 2000년도 이후 도서관분야의 노인연구와 외국에서 개발된 도서관 노인 서비스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노인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96년 저널리스트인 게리 앤드류 풀(Gary Andrew Poole)이 New York Times 1월 29일자에 기고한 ‘A New Gulf in American Education, the Digital Divide’ 제하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Guntel 2003, 502).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계층, 성별, 연령별로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계속해서 변해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OECD에서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해서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개인, 가정, 기업체 및 지역 사이의 격차”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1, 4). 국내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스마트기기의 등장과 그 이후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격차는 새로운 유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의 보급은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여주는 하지만 정보격차를 해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용완(2007, 172)은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활용능력과 정보를 대하는 인식, 의식 등 여러 요인이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접근성에만 치우친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관련 활동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접근격차 외에도 정보의 활용능력의 격차와 정보 마인드의 격차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격차는 정보격차의 생성이 정보기기에 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정보기기 이외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정보기기의 보유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여부 및 양적인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정보활용에서의 질적인 격차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정보격차의 개념이 양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질적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어 정보격차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이승민 2012, 33).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의 활용성을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보유와 활용으로 인해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승민 2012, 34).

한편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는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격차가설(gap hypothesis)과 현실론이 있다. 확산이론은 정보격차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보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김현곤, 황종성, 조정문, 2000: 조정문 2001).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가 신기술 보급의 S모형에 의한 확산이론이다. 전화, 라디오, TV와 같은 20세기에 나온 기술들은 S자형의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졌다. 즉 보급 초기에는 엘리트들만이 수용하여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느리지만, 성숙단계가 되면 다수가 기술을 수용하게 되어 기술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

지고, 대다수가 수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기술확산 속도는 늦으나 포화상태로서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산이론은 인터넷 역시 현재는 보급률이 낮지만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매체가 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TV처럼 일상화되기 보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단절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들도 있다.

격차가설은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해소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김현곤, 황종성, 조정문, 2000: 조정문 2001). 이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정보화와 함께 첨단 디지털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의 풍요 속에서도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들을 한다. 20세기의 발명품인 라디오, TV, 전화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크기, 가격, 질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동일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인터넷의 접속과 사용에서의 계층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접근과 활용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실론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와 같은 이론적 논의보다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강조하는 관점이다(김현곤, 황종성, 조정문, 2000: 조정문 2001).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부가 취하는 입장으로,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해결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관점은 정부의 정책개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확산이론과는 다르며, 정보격차를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매체의 보유 및 이용능력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정보격차가설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 국가적으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격차와 도서관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다. 도서관분야에서는 2006년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조문에 포함되게 되었다.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의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8장에는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독립된 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와 제45(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제43조에는 1항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는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5년 단위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이 수립되었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는 이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도서관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르면 7대 추진전략 중 하나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이다. 정책과제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는 첫번째 정책과제인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는 두 번째 정책과제인 “특수 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61). 정책과제에는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환자와 보호자, 수용자, 장병 등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대상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정보시설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까지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노인집단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에서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활자본 등 노년층을 위한 장서개발 확대, 건강 등 노인 관심분야 정보서비스 개발, 노인 이용편의 도서관 환경 조성,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등 독서나눔 활동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

획(2014-2018) 2017년도 시행계획』세부계획 중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항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2017년에 추진할 도서관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항목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형서비스 강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강화,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서비스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 대상 도서관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전략에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노인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생애주기의 한 집단으로서 당연히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만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 보다 강화된 도서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도서관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서는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연령의 정의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법」에서 노인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동법에서 인정된 노인은 65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적으로 노인 대신 고령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2016. 12. 30.)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서는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여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어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은 고령자로, 「도서관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정보격차 관련 법률 규정

노인층은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회집단으로서 정보격차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겪을 가능성이 있기에(Kuttan and Peters 2003, 53-74)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별도의 정책적 조명을 받게 된다. 노인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는 노인복지정책의 일부로, 또는 정보화정책의 한 분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소관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 개의 법체계에 의해 제도화된다. 하나는 국가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정보화 관련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처의 소속기관 직제규정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격차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노인정보화와 관련된 정부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동부에 한정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각 부

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이들 부처의 소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격차 문제는 단지 정보통신 분야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사회 문제로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으나 기존 법령 및 제도와의 중복 규정이나 추진과정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22일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흡수·통일·제정·공포하였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을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보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속에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동법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조항은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이 있다.

2.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와 그 소속직제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 2017. 7. 26.)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제2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제3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灑整)·약정(摺整)·생활보호·자활 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제38조),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제40조)를 각각 관장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정보화에 관한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노인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정보화 사무와 노인 사무에서 모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처간 소관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부처의 소속기관 직제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0호 일부개정 2017. 7. 26.) 제3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한 부처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9조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 총 45개 중 정보화와 관련된 사무는 2개이며, 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의 분장사무 총115개 중 정보화와 관련된 사무는 13개로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정보화와 관련된 규정

조	구분	항	내용
제 9조	기획조정실장	17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13조	정보통신정책실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5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36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8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1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1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6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 3조에는 문화예술정책실의 직무로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및 지원,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13항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사무분장 중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87호 일부개정 2017. 9. 12.) 제3조에는 부처의 직무로서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다. 동 직제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구 및 출산 등을 보건복지부의 직무로 추가하여 정하고 있다. 노인사무는 제16조 인구정책실에 분장된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사회사회 관련 정책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제정 2014. 3. 18.)에 의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되었다. 제2조의 규정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고령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제15조의2 “노후설계”,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5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58호 일부개정 2017. 9. 1.) 제3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한 부처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노인사무는 제10조 고용정책실에 분장되며, 동 본부는 이를 위해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빈곤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 외에 노인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등 노인의 고용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IV. 도서관계 노인 서비스 동향

1. 노인 연구

본 연구에서는 노인관련 도서관계의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에 수록된 23편의 논문을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로 노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 운영 현황, 프로그램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장서, 정보검색에 관한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정보취약계층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

<표 2> 노인관련 도서관계의 연구

번호	주제영역	논문
1	노인 서비스 정책	김선호(2002)
2	노인 서비스 운영 현황	김보일, 김선호(2017), 김다운, 차미경(2016), 노아름, 오동근, 여지숙(2015), 김선호(2004), 김선호(2003), 장혜란(2002)
3	노인 프로그램 분석	이명희, 김미초(2010), 조은주, 장혜란(2010)
4	노인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김은지, 이성신(2014), 오선혜, 이성숙(2012), 김영신(2007), 박옥화(2007)
5	노인 장서	장혜란(2015)
6	노인 정보검색	나경식, 정용선(2017), 김정아, 장혜란(2016)
7	정보취약계층	김홍열(2016), 윤정옥(2012), 윤희운(2012), 장덕현(2012), 이정연(2011)
8	정보격차	이승민(2012), 조용완(2007)

구는 주요 연구만 포함하였다.

노인 서비스에 관한 대표적인 정책연구로, 김선호의 연구(2002)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UN, ISO/IEC,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도서관이 개발하여야 할 노인 서비스의 정책에 관한 방향을 4가지 주제(서비스 정책의 수립, 인터페이스의 개발, 장서의 개발, 서비스의 확대)와 17개의 세부사항(①국가적 차원의 규정 마련 ②노인의 정의 및 요구 조사 ③ 노인 전문 사서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④노인 전문 자료 및 보조 기기 구입 예산의 고정화 ⑤노인 전용 웹 페이지의 개발 ⑥건강, 보건 및 문화 인프라의 콘텐츠 개발 ⑦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별 장서의 개발 ⑧신문 및 뉴스 자료의 확보 ⑨음반 및 영화필름의 확보 ⑩노인전용 공간의 확보 ⑪신체적 또는 감각적 보조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확보 ⑫자료 및 정보 접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⑬노인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 ⑭직접 방문 서비스의 확대 실시 ⑮인쇄 매체의 낭독 서비스 제공 ⑯입구에서 출구까지 밀착 안내 서비스, ⑰편의시설의 확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노인 서비스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로, 김보일, 김선호의 연구(2017)에서는 LibQUAL+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주요 이용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서비스 영향력, 정보 제어, 도서관 장소 그리고 재이용의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노인 이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적합한 정보자료 및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이용자의 세분화된 연령별 정보요구에 따른 장서 개발 그리고 노인 서비스에 적합한 전담 인력을 배치를 제안하였다. 김다은, 차미경의 연구(2016)에서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지역정보의 유형 및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를 통한 고령자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아름, 오동근, 여지숙의 연구(2015)에서는 대구 소재 17개 시립 및 구립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노인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서비스 분야는 시설, 자료이용 보조기구, 대환자본 자료,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노인 이용자 수요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보강해야 할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선호의 연구(2004)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에서 정한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노인의 표준인체지수를 비교분석하여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서 제시한 수치가 노인에게도 적합한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김선호의 연구(2003)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와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장혜란의 연구(2002)에서는 인터넷기반 노인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은 대중매체와 비공식 구두커뮤니케이션

을 선호하며 요구정보는 건강의료, 뉴스, 취미, 종교, 레저여행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 프로그램 분석에 관한 연구로, 이명희, 김미초의 연구(2010)에서는 서울시 소재 노인 종합복지관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준비교육, 취미, 취업/자원봉사의 6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해당 주제를 조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취미(34.1%), 기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업/자원봉사(17.1%), 죽음준비(7.3%)순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문제점에 따른 제언하였다. 조은주, 장혜란의 연구(2010)에서는 독서치료가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서치료를 통해 스트레스인지 테스트와 스트레스반응테스트를 통해 효과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을 대상으로한 독서치료는 집단대면프로그램과 개별통신프로그램 모두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통신프로그램 보다 집단대면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로, 김은지, 이성신의 연구(2014)에서는 공공도서관 노인이용자들과 담당 사서들이 노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ALA의 노인 서비스가이드라인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언을 하였다. 오선혜, 이성숙의 연구(2012)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시니어는 대학생과 지역주민의 불안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정보 요소의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신의 연구(2007)에서는 노령자들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선호 프로그램 유형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박옥화의 연구(2007)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특성, 만족도,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여성 고령자에 비해 남성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고령 이용자들의 특성은 60대의 건강하며,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이 중 이상이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적은 잠재적 이용자, 즉 70대 이상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은 고령자, 그리고 여성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과제로 밝혀졌다.

노인 장서에 관한 연구로, 장혜란의 연구(2015)에서는 노인의 독서 장애요인과 노안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한글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수집 및 이용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노인 정보검색에 관한 연구로, 나경식, 정용선의 연구(2017)에서는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검색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감정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김정아, 장혜란의 연구(2016)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를

들을 대상으로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정보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을 포함하는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연구로, 김홍열의 연구(2016)에서는 도서관 통계지료를 활용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각 도서관이 투입하는 요소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인용 특수자료의 지속적인 감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윤정옥의 연구(2012)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므로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희운의 연구(2012)에서는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지향성과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덕현의 연구(2012)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3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정연의 연구(2011)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전문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 이승민의 연구(2012)에서는 기존의 정보격차 생성요인들과 스마트 기기 보유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용완의 연구(2007)에서는 국내 58개 공공도서관을 표본으로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어촌 거주자,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도서관 분야에서 노인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비교적 다른 주제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되어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02년에 발표된 김선호의 연구 이외에 단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기하였다.

2. 노인 서비스 지침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은 노인 서비스 정책수립에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하지만 아직 국내

에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국외에서 생산된 지침의 예로는 UN(United Nations)의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미국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산하 RUSA(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의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 캐나다 CLA(Canadian Library Association)의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등이 있으며, <표 3>과 같다.

<표 3> 노인 서비스 지침

국가	생산기관	지침	제정/개정 연도
UN	UN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미국	ALA 산하 RUSA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	1987, 1999, 2008, 2017
캐나다	CLA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2002

UN은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의 서론부분에서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신념과, 남녀와 국가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 발전과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삶의 더 나은 기준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한 지침으로, 각 정부의 국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독립심(independence), 사회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충족(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으로 구성된 5가지 주요 내용과 1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RUSA에서 개발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침은 1987년 최초로 제정된 후 1999년, 2008년도의 개정을 거쳐 금년 2017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거의 10여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다. 2008년 지침인 『Guidelin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Older Adults』는 2017년에 개정되면서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으로 지침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노인을 지칭하는 단어 'older adults'가 '60+ audience'로 바뀐 것이다. 2008년 지침에서의 노인은 5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2017년 지침에서의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명칭도 영어의 '60+ audience'로, 이를 해석하면 '60세 이상의 독자' 또는 넓은 의미의 '60세 이상의 이용자'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침의 서론부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하고, 전례 없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가진 세대로 노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직원 교육(staff training), 정보서비스와 장서(information services and collections),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programming), 기술(technology), 관외 서비스와 협력체제(outreach and

partnerships), 재가 노인과 특수 환경의 노인집단 서비스(services to the homebound and special populations), 시설(facilities), 재원과 예산(funding and budgeting)으로 구성된 8가지 주요 내용과 5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CLA의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는 2002년에 개발되었다. 이 지침에서의 노인은 은퇴를 하거나 65세 정년퇴직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대략적인 연령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7개로 구성된 주요 내용과 3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계획수립과 예산에 반영한다. ② 지역사회 노인의 특별한 요구와 관심은 도서관의 장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반영한다. ③ 노인을 위해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방문하도록 만든다. ④ 도서관이 연장자 정보를 위한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⑤ 노인집단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⑥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⑦ 도서관 직원이 예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노인에 봉사하도록 교육시킨다.

3. 노인 서비스 현황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을 활용하여 시도별 도서관수, 노인 이용자수, 도서관 총예산, 노인예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데이터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들만 가지고 조사하였다.

현재 도서관통계에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를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다. 이중 각 공공도서관들이 입력하고 있는 노인 봉사대상자수를 살펴보면 동일한 지역 예를 들면 일부 구립 도서관들은 동일한 봉사대상자수를 입력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들의 봉사대상자수를 합하면 도서관이 속해있는 시도의 인구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사대상자수는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나와 있는 추계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시도별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 봉사대상자 현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696,216명 중에서 노인은 6,995,65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한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봉사대상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지역은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 인구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역시 제주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노인 인구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9.3%에서 18.3%로 지역에

〈표 4〉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봉사대상자 현황(2016년도)

시도	전체인구(명)	65세 이상 노인 봉사대상자(명)	비율(%)
서울	9,930,616	1,295,899	13.0
부산	3,498,529	536,064	15.3
대구	2,484,557	328,901	13.2
인천	2,943,069	324,255	11.0
광주	1,469,214	172,572	11.7
대전	1,514,370	171,568	11.3
울산	1,172,304	108,768	9.3
충북	1,591,625	240,690	15.1
충남	2,339,775	374,305	16.0
전북	1,864,791	341,203	18.3
전남	1,903,914	398,916	21.0
경북	2,700,398	492,417	18.2
경남	3,373,871	480,278	14.2
강원도	1,550,806	266,152	17.2
경기도	12,716,780	1,374,475	10.8
제주도	641,597	89,189	13.9
합계	51,696,216	6,995,652	13.5

따라 차이가 비교적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인구대비 노인의 봉사대상자수가 많은 지역은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인구의 18.3%의 전북, 18.2%의 경북, 17.2%의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농촌의 고령인구가 많아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울산은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밖에 지나지 않아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0.8%의 경기도, 11.0%의 인천, 11.3%의 대전, 11.7%의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을 나타낸다. 〈표 5〉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4.3%가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노인 1명이 여러 번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 데이터보다 적은 노인들이 이용했을 것이라고 해도 노인들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773,349명, 961,701명으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는 65세 이상 노인 대비 이용자수 비율이 59.7%, 70.0%로 전국적으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 지역의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충북은 노인인구 240,690명 대비 195,74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다른 시도

〈표 5〉 노인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2016년도)

시도	도서관수(관)	노인 이용자수(명)	65세 이상 노인 봉사대상자(명)	비율(%)
서울	147	773,349	1,295,899	59.7
부산	40	94,736	536,064	17.7
대구	35	114,110	328,901	34.7
인천	47	115,427	324,255	35.6
광주	22	25,159	172,572	14.6
대전	24	69,445	171,568	40.5
울산	17	24,606	108,768	22.6
세종	5	7,408	-*	-
충북	44	195,742	240,690	81.3
충남	59	190,290	374,305	50.8
전북	58	163,806	341,203	48.0
전남	64	103,840	398,916	26.0
경북	64	75,444	492,417	15.3
경남	65	142,824	480,278	29.7
강원도	54	29,961	266,152	11.3
경기도	244	961,701	1,374,475	70.0
제주도	21	9,396	89,189	10.5
합계	1,010	3,097,244	6,995,652	44.3

*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세종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 비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데이터는 노인 1명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노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70.0%, 59.7%이며, 충남 50.8%, 전북 48.0%, 대전 4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 비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강원도, 경북, 광주, 부산은 그 비율이 10%대로 나타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인구가 전국 3위이며 대도시지역이라 노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인데도 노인 이용자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표 6>은 공공도서관 노인예산 현황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예산 908,447,639천원 가운데 노인예산은 3,454,934천원으로 전체 도서관예산 가운데 0.38%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전체 도서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노인 예산은 서울이 985,527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5,493,334천원, 전남 475,858천원, 충남 328,135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서관예산

〈표 6〉 공공도서관 노인예산 현황(2016년도)

단위: 천원

시도	도서관 총예산	노인예산	노인예산 비율(%)
서울	125,673,916	985,527	0.78
부산	50,468,990	101,412	0.20
대구	30,175,608	118,940	0.39
인천	42,886,930	99,581	0.23
광주	25,916,083	151,849	0.59
대전	21,804,271	13,181	0.06
울산	13,893,503	77,310	0.57
세종	1,609,419	0	0
충북	39,225,451	51,172	0.13
충남	41,947,732	328,135	0.78
전북	36,848,707	88,793	0.24
전남	59,132,988	475,858	0.80
경북	45,618,134	153,265	0.34
경남	53,060,434	105,310	0.20
강원도	38,929,867	122,386	0.31
경기도	266,847,989	549,334	0.21
제주도	14,407,617	32,881	0.23
합계	908,447,639	3,454,934	0.38

대비 노인들의 예산 편성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체 도서관 예산 59,132,988천원 중에서 475,858천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예산편성비율이 0.8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 0.78%, 충남 0.78% 광주 0.59%, 울산 0.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이 도서관 전체예산 21,804,271천원 중에서 노인 예산이 13,181천원을 배정하여 그 비율이 0.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체 도서관 예산 대비 노인 예산이 낮은 지역은 충북 0.13%, 경남 0.19%, 경기도 0.20%, 부산 0.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도서관 예산은 266,847,989천원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예산은 549,334천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비율로 보자면 0.20%로 낮아서 노인 서비스를 위한 예산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노인에 대한 예산은 도서관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에서 노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는 실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3.8%로 거의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17). 향후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5.6%, 2040년 32.8%, 2060 41.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16).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부처, 지자체, 복지기관, 문화기관,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고령사회의 도래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도서관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 분야에서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는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으로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에 나타난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정부부처에서도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복지기관, 문화기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되 국가적 차원에서의 단일한 기본거점기관이 필요하며 여러 기관 중 공공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 첫째, 공공도서관은 전국 각지에 1,010개관이 운영되고 있어 지리적인 접근성이 뛰어나 노인들이 오고 가기가 편리하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사서라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배출된 전문직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므로 일시적인 사업의 성

격을 갖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므로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을 활용하여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은 노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할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 여가, 고용, 복지시설, 평생교육과 실버용품에 관한 정보 등 노인 전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김영신(2007)은 노령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의 거점기관으로 대규모 노인복지관도 고려될 수 있으나 여가활동위주의 복지관 보다는 지식사회에 지식정보 유통기관으로의 인프라를 갖추고 일상 생활권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조에 의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보다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제 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가칭)에는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2014년에 수립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수행해야할 7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부계획을 보면 장애인,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환자와 보호자, 수용자, 장애인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노인의 정보 서비스를 위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동 계획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에서 노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수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단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활자본 보급 이외에는 노인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7). 이는 노인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도서관 주요 정책과제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향후에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강화된 정책이 제시되어야만 17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서비스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노인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산의 부족

이다. 2016년 현재 전체 공공도서관(1,010개관) 노인 예산이 약 34억에 불과하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노인 예산을 가지고 서울의 경우 147개 도서관의 총 예산은 9.8억으로 1개관의 1년 노인 예산은 약 67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전국의 도서관이 매우 적은 예산으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희(2010)는 노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자하는 정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므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노인 분야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예산의 우선순위에 노인집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홍열(2016)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예산편성과 서비스에서 다문화계층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연구결과 확인되어 노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4) 공공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관련법을 살펴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은 고령자,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문헌정보학 분야 노인연구에서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노인의 연령은 50세, 55세 또는 60세 이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다운, 차미경(2016)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55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장혜란(2002)은 노인을 우리나라의 전통과 퇴직연령을 간주하여 노인의 시작연령을 60세로 보고, 60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선호(2002)는 공공도서관에서는 법률적 나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노인은 50세 이상부터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을 중년층 노인(50-65세 미만)과 고령층 노인(65세 이상)의 두 이용자집단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개발된 노인 서비스를 위한 지침인 미국 ALA 산하 RUSA의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와 캐나다 CLA의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에서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 분야에서도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서 연구자와 지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도서관계는 노인층을 도서관 정책의 중심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침

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17). 이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4.3%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773349명(59.7%), 961701명(70%)으로 노인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참조). 이와 같이 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노인들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으나, 노인에게 대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어린이나 유아에 비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서관 정책부문에서 이명희(2010)는 공공도서관 정보정책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이나 성인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층은 도서관 정책의 중심계층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정옥(2012)은 노인들을 단순히 정보취약계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구성비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해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집단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수립과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이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ALA 산하 RUSA에서 1987년 노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을 제정하여 거의 10여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 지침으로는 2017년에 개정된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가 있다. 이러한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지침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침개발이 시급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는 협력체계 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과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든 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이 활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의 요구에만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노인관련 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도서관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또한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를 함으로써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다운, 차미경. 2016. 고령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13-233.
- 김보일, 김선호. 2017. LibQUAL+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319-344.
- 김선호. 2004.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67-178.
- 김선호. 2003. 공공도서관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111-124.
- 김선호. 2002. 공공 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01-123.
- 김영신. 2007.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에 대한 잠재이용자 인식 연구 :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5-79.
- 김은지, 이성신. 2014. 공공도서관 노인 서비스를 위한 제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59-76.
- 김정아, 장혜란. 2016. 노인 당뇨병 환자들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1): 197-223.
- 김현곤, 황종성, 조정문. 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전산원.
- 김홍열(2016).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의 지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193-214.
- 나경식, 정용선. 2017. 건강정보검색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감정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27-243.
- 노아름, 오동근, 여지숙. 2015.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노인서비스 현황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8, 93-98.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7.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7년도 시행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오선혜, 이성숙. 201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57-276.
- 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89-206.
-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이명희, 김미초. 2010.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노인종합복지관과 비교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91-107.
- 이승민. 2012. 미국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9-52.
- 이정연. 2011.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7-39.
- 장덕현. 2012.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193-210.
- 장혜란. 2015. 노안 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341-360.
- 장혜란. 2002.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4): 185-212.
-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조은주, 장혜란. 201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259-281.
- 조정문. 2001.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 및 해소정책. 『정보학회지』, 19(9): 26-36.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 e-나라지표.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http://index.go.kr/>> [인용 2017. 10. 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ALA. RUSA. 201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 <<http://www.ala.org/rusa/sites/ala.org.rusa/files/content/resources/guidelines/60plusGuidelines2017.pdf>> [인용 2017. 12. 7].
- CLA. 2002.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http://cla.ca/wp-content/uploads/Library-and-Information-Services-for-Older>

- Adults-No v-2007.pdf> [인용 2017. 12. 7].
- Guntel, David J. 2003. "Second Thoughts: Toward a Critique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5(4): 499-502.
- Kuttan, A. and Peters, L., 2003.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Lanham, MD: Scarecrow.
- OECD. 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aris: OECD.
- UN. 1999.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OlderPersons.aspx>> [인용 2017. 12. 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Daeun and Mikyeong Cha. 2016. "A Study 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for Elderly Peopl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13-233.
- Kim, Bo-il and Seon-Ho Kim. 2017.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of Older Persons in Public Libraries by the Use of LibQUAL+: The Case of G-gu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319-344.
- Kim, Seon-Ho. 2004. "A Study on the Facilities for Old Persons in the Public Library Build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4): 167-178.
- Kim, Seon-Ho. 2003. "A Study on the Interface Design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111-124.
- Kim, Seon-Ho. 2002. "The Study on the Policies for Public Library Services to Older Pers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101-123.
- Kim, Young-Shin. 2007. "Study on the User's Cognition of Public Libraries' Service for Senior Citizens : Through Survey of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55-79.
- Kim, Eun Ji and Sung Shin Lee. 2014. "Recommendations on the Public Library

- Servic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59–76.
- Kim, Jeong-A and Hye-Rhan Chang. 2016. “A Study on the Information Behavior of Older Adults with Diabe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197–223.
- Kim, Hyungon, Jongsung Hwang and Cheungmoon Cho. 2000.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Plan for Solving Digital Divide*. Seoul: Korean Computerization Agency.
- Kim, Hong-Ryul. 2016. “Analysis of Indicators for Information-Poor shown in Library Stat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193–214.
- Na, Kyoungsik and Yongsun Jeong. 2017. “Exploring Older Adults’ Experienced Barriers and Emotional Changes in Seeking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227–243.
- Lho, Areum, Dong-Geun Oh and Ji-Sook Yeo. 2015.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Senior Services in Daegu Public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24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5.8, 93–98.
- Park, Ok-Wha. 2007. “A Study on the Elderly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75–396.
- Oh, Sun-Hye and Sung-Sook Lee. 2012.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Senior Us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57–276.
- Yoon, Cheong-Ok, Dong-Chul Kwack and Kyung Shim. 2012.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6(4): 189–206.
-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 Lee, Myeong-Hee and Mi-Cho Kim. 2010. “A Study on the Services of Senior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Compared with the Senior Programs in Senior

- Welf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91–107.
- Lee, Seungmin. 2012. “Analysis of the Effects of Smart Devices on Digital Divide in Americ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29–52.
- Lee, Jungyeoun. 2011.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Library Policy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7–39.
- Chang, Durk Hyun. 2012.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 Agenda for the Core Information–Poor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93–210.
- Chang, Hye Rhan. 2015. “Availability of Accessible Large–Print Books for the Readers with Presbyopia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341–360.
- Chang, Hye Rhan.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9(4): 185–212.
-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
- Cho, Eun–Joo and Hye–Rhan Chang.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Program to Reduce Stress of Bibliotherapy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259–281.
- Cho, Cheung Moon. 2001. “Understanding and Policies for the Digital Divide.”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9(9): 26–36.